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
(안 제11조)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 신고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3조의2)

법 제24조의4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18조)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18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0(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8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1(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8조의4 및 별표 4)

법 제24조의12(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국·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참전유공자단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9조)

법 제28조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단체의 국·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을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품목에 관한 사항”을 “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사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정(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③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바꾸려는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익사업의 승인조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또는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의3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단체”를 “각 참전유공자단체”로, “다음”을 “수익사업이 다음”으로, “해당하는 수익사업일”을 “해당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직접생산”을 “직접 생산”으로, 같은 목 및 나목 중 “참전유공자단체”를 각각 “각 참전유공자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참전유공자단체의”를 “수익사업이 각 참전유공자단체의”로,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를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를 “또는”으로, “신청받”을 “그 신청을 받”으로, “결정하여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를 첨부하여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예정일(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일을 말한다)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4조의4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법 제24조의10(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실태조사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1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제1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법 제24조의5(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법 제24조의12제1항 각 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고,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내주어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단체”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참전유공자단체(이하 “수익사업운영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2조제1호의 승인기준”을 “제12조제2호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6”을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24조의12”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참전유공자단체는”을 “수익사업운영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유공자단체”를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4조의4제1항”을 “법 제24조의6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을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의 회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을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의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참전유공자단체”를 “소속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4조의5제3항”을 “법 제24조의7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참전유공자단체”를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제7항 중 “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4조의4제6항 단서”를 “법 제24조의6제6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를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10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1. 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 2. 제11조의2·제12조에 따른 승인조건 또는 승인기준의 준수 여부
-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 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11제1항 각 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보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11제1항제3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 처분 내역

③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제18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12(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12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참전유공자단체에게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제2항과 관련된 참전유공자단체, 계약의 상대방 또는 해당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는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24조의12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서에 관련 계약을 명시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12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의12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한 참전유공자단체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수익사업 실적 보고)”를 “(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8조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이하 “계약등관련자료”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등관련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용도
4.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5.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현황 및 상태
6.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법적 분쟁

③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8조제4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영 제12조의3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8조의4제1항·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참전유공자”를 “소속 수익사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단체”를 “운영단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정지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취소(제2호가목·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아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단체가 법 제30조제3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1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인취소			
나.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2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인취소			
다.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3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인취소			
라. 법 제24조의3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4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마. 법 제24조의5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5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인취소			

바.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6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사. 법 제24조의10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7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아. 법 제30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8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자. 법 제31조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9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차. 법 제3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10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카.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11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승인취소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의12 제1항제12호(법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13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24조의12 제1항제14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업종)	
	사업장 소재지	

「첨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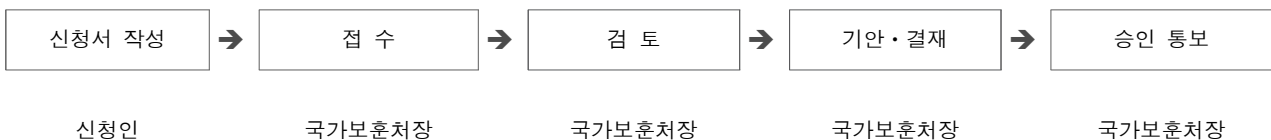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사업소 직원 현황 및 조직도 및 관련 설비 현황 - 사업 경영을 위한 자금 명세 및 자금 조달 방법 - 경영계획 및 수익금 사용계획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첨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사업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1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사업수행자 지정서

1. 지 부 명:
2. 대 표 자: ○ ○ ○ (생년월일)
3. 주 소:
4. 수익사업명:
5. 사업구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수익사업운영단체) 회장

직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사업장 소재지	
	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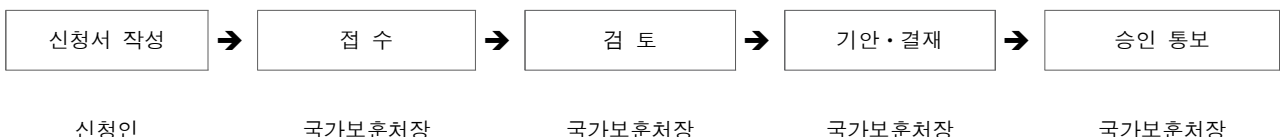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사업의 사업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신고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 사항	① [] 각 참전유공자단체 회장의 교체		
	② []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③ []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의 변경		
	④ []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		
변경 내용	변경일(변경사항을 그 변경일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적습니다)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단서(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만, ④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접수 국가보훈처장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 ○ ○ (생년월일)
3. 주 소:
4. 승인내용:
5. 수익계약대상단체 여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승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희망하는 유효기간 연장기간 및 그 이유	희망하는 유효기간 연장기간		
		희망하는 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2항(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심사	→	기안·결재	→	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통보
신청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제 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 ○ ○ (생년월일)
3. 주 소:
4.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5. 승인시기: 승인번호:
6. 사업장 소재지:
7. 유효기간 연장 기간: . . . ~ . . . (년 개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제 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 생 산 품 목: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00000-00000000)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본사):
(사업장):
6. 유효기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직인

[illegible]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u>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u>	2. ----- ----- <u>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참전유공자단체”라 한다)는 <u>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u> 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제11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 ----- ----- ----- ----- ----- <u>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3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1. -----

-- 품목
2. 수익사업-----

---- 사용계획
3. -----
----- 지정(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

<신 설>

<신 설>

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
된 수익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③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총리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2.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2조제2호에 규정된 각 참
전유공자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
경하려는 경우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바꾸
려는 경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2(수익사업의 승인조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3
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또는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법 제24조의3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각 참전유공자단체-----
 -- 수익사업이 다음 -----
 -- 해당할 -----
 --

가. 중소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참전유공자단체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참전유공자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 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

가. -----
----- 직접 생산

----- 각 참전유공자단체-----

나. 각 참전유공자단체-----

1. 수익사업이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단체가 운영하기---

3. ----- 법 제24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3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12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
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
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
다) 1부

5. (생략)

<신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
행자 지정서[법 제24조의3제1
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수
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
우만 해당한다] 1부

5.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각 참전유공자단
체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
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
다)를 첨부하여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
경예정일(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에는 변경등기 신청일을 말한
다)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참전유공자단체”로 본다.

<신 설>

또는 -----
----- 그 신청을
받-----
----- 결정-----

-----.

<삭 제>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4조의4제2

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법 제24조의10(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실태조사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1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3. 제12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법 제24조의5(법 제18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법 제24조의12제1항 각 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

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제12조제1호의 승인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

용을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고,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 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각 참전유공자단체(이하 “수익사업 운영단체”라 한다)-----

-----.

② -----

----- 제12조제2호의 기준-----

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6(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해당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

③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24조의12-----

-----.

제14조의2(사업수행자 지정) ① 수익사업운영단체는 -----

-----.

② -----

포함한다)을 하되, 참전유공자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
기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
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
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해당 참전유공
자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으로 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
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참전유
공자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
다.
② (생략)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참전

----- 수익사업운영
단체-----
-----.

제15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
기 등)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

----- 소속 수익사업
운영단체의 회장-----
-----.

제1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 소속 수익사업
운영단체의 회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소속 수익

유공자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24조의5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전유공자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① 참전유공자단체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

사업운영단체-----

----.

④ ----- 법 제24조의7 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⑤ -----
--- 해당 수익사업운영단체 ---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회장-----.

제17조(재심의 요구 등) ① ----

----- 법 제24

조의4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
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
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16
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법
제24조의6제6호에서 “총리령으
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란 참전유공자단체가 승인을 받
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
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
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

조의6제6항 단서(법 제18조의2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
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
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
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
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
다.

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②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
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인회계
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법 제18
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참견
유공자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
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실태조사) ① 국가보훈
처장은 법 제24조의10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각 참
견유공자단체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11조의2·제12조에 따른

<신 설>

승인조건 또는 승인기준의 준수 여부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11제1항 각 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정보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11제1항제3호(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

<신 설>

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
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
지 처분 내역

③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제1항
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
게 해당 정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
른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
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제18조의4(수익사업에 관한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12(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
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4조의

12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참전유공자단체에게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제2항과 관련된 참전유공자단체, 계약의 상대방 또는 해당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는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

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24조의 12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서에 관련 계약을 명시해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12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24조의12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지를 한 참전유공자단체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참전

제19조(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

유공자단체는 승인을 받은 수익 사업에 대하여 법 제32조(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법 제24조의3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삭 제
<신 설>

각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8조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이하 “계약등관련자료”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등관련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1.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
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 또는 허가·승인
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사용용도

4.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등기·등록 등

5.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의 현황 및 상태

6.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
산에 관한 법적 분쟁

③ 각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
8조제4항(법 제18조의2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법 제18
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입한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
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
일 전까지 영 제12조의3 각 호
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국가보훈처장
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8조의4제1항·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